



강 남 구 의 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백지신탁제도 등 신고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과-1515(2015.12.17.)호, 감사담당관-18285(2015.12.2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3. 2016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와 관련하여 주식보유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공개대상자는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아울러, 재산공개대상자는 ‘15.1.1. ~ ’ 15.12.31.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주식거래의 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오니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2016. 1. 29.(금)까지 주식변동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백지신탁제도 ☞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정무직, 1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 대상주식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기준일 :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함.
 - (1)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2) 변동사항신고 유예사유(공직자윤리법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3)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소속 위원회 변경)
 - (4)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 운영절차 :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실시해야 하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 심사결과 ☞ 직무관련성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 → 등록기관에 신고 → 시보에 공개(1개월이내)
☞ 직무관련성 없음 : 주식 보유 가능
- **의무위반시 제재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붙임 : 1. 2016년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안내 1부
2. 2016년 주식거래내역 신고 안내 1부. 끝.

강 남 구 의 회 의 장

수신자 김명옥 의장, 송만호 부의장, 이재민 운영위원장, 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 오완진 의원, 양승미 의원, 이경옥 의원, 김병호 의원, 이재진 의원, 이관수 의원, 한용대 의원, 최민속 의원, 최종현 의원, 문백한 의원, 이호귀 의원, 김광심 의원, 이인화 의원, 서경원 의원, 여선웅 의원

주무관 **윤석호** 의정팀장 **홍남기** 구의회사무국장 01/04 **이동호**

협조자

시행 강남구의회-59 () 접수 ()
우 062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 (대치동) /
전화 02-3423-8108 /전송 02-3423-8926 / ys7ho@gangnam.go.kr / 대시민공개